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46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조인철·정진욱·문금주

신정훈 • 민형배 • 박균택

안도걸 · 양부남 · 정준호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하여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

적으로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등).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의 제목 중 "열람금지"를 "열람 및 제공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을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중 "열람"을 각각 "열람·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열람시기"를 "열람·제공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열람으로"를 "열람 또는 제공으로"로, "열람 실태"를 "열람·제공 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열람"을 "열람·제공"으로 한다.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69조제2항제2호 중 "열람"을 "열람 또는 제공"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영상정보의 <u>열람금지</u>	제33조의3(영상정보의 <u>열람 및</u>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제공 금지 등) ①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	
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u>하</u>	<u></u> কূ
<u>여서는</u> 아니 된다. <u><후단 신</u>	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
<u>설></u>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u> 여서는</u> <u>영상정보를</u>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
	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하
	<u> 여야 한다.</u>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	1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할 목적으로 <u>열람</u> 시기·절	<u>열</u> 람·제공
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2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u>열</u>	<u>열</u>

<u>락</u>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3. 4. (생략)
-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② · ③ (생 략)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실태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조사·점검하여야 한다.
-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u>열람</u>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u>람·제공</u>					
3. • 4. (현행과 같음)					
5					
<u>열</u> 람					
<u>• 제공 시기</u>					
② • ③ (현행과 같음)					
4					
열람 또는 제공으로					
<u>열</u> 람·제공					
<u>실태</u>					
⑤					
<u>열</u> 람 •					
제공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u>열람</u>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③ (생 략)

<u>.</u>
제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u>열</u> 람 또는 제공
③ (현행과 같음)